

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		4일

신고인	상호:	
	대표자:	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):
	사무소 소재지:	전화번호:

신고 세부 내용	사업의 종류:		
	허가나 등록 번호:		허가나 등록 연월일:
	사업소 소재지:		
	지위승계 내용	[] 상속 [] 양수 [] 합병 [] 그 밖의 것	
	상호의 변경	(변경 전)	(변경 후)
	※ 상호의 변경을 지위승계 시 같이 하고자 하는 경우 표기		
지위승계 연월일:			

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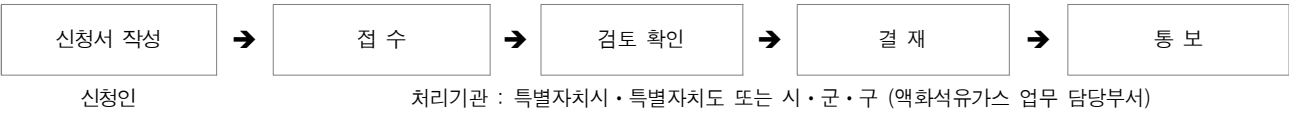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허가증 또는 등록증 1부 2. 계약서 사본, 상속·경매·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만 제출합니다)	

처 리 절 차



행정처분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

1.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13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8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(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)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.

가.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

처분받은 날	행정처분 내용	행정처분 사유

나. 행정처분 절차 진행사실

적발일	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 위반행위	진행 중인 내용

- 1)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받은 날란에 "없음"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.
- 2)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,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행정처분 내용을 수정하게 해야 합니다.
2. 양수인은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16조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.

____년 ____월 ____일

양도인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주소

양수인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주소